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이상철
주거 군포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주시 이하 생략

검 사 허○(기소), 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섭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4:04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숙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네 주인 누구냐?”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이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8. 23. 10: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기사나 보도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언론 보도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한 까닭에, 이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위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종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어오던 중 2020. 6. 5. 그 소유 차량을 경계 보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정○○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위 차량에 부착하자 “주차한지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걸 왜 붙이냐? 야 이 자식아 너 주인이 누구야, 누가 시켰어”라며 정○○의 왼손을 잡아채고 그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차량을 인도 쪽으로 붙인 후 다시 “왜 스티커 안 떼느냐”며 정○○의 왼쪽 어깨 부분을 힘껏 미는 등 이른바 “갑질 행패”를 부렸고, 이로 말미암아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그 내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대화방에 들어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던 까닭에, 피고인으로서 다른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갑질” 행위의 근절

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면에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인 까닭에, 그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명예훼손적 표현의 방법과 동기,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私益)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어오던 중 2020. 6. 5. 아파트 경로당 인근 3거리 모퉁이에 그 소유의 차량을 경계보도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다가, 주차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정○○이 위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자, 정○○으로부터 스티커 뭉치를 잡아챈 후 스티커 뭉치로 그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사실이 위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등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언론에도 ‘유치원 원장의 갑질 폭행’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단체 대화방 내에서도 입주주민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지 시시비비를 가려 그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차단기 설치 등 단지 내 주차문제의 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정○○의 이후 근황을 소개하거나 ‘주민들도 이런 경우는 같이 도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들과 피해자에 대한 규탄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의 일시와 장소 등을 게시하였던 사실, 그러한 와중에 같은 해 8월 초부터 위 대화방에 아파트 입주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피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한 입주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이 다시금 피해자에 대한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들을 계속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몰타기를 하니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 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신문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카톡 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신문 기사를 안 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서 약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신문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아울러,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들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연결된 기사나 보도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를 이른바 “갑질” 행위로 보아 이를

비판하며 그러한 갑질 행위 근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며, 피고인이 그 인터넷 주소를 게시한 장소도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만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피해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 재발 방지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객관적으로도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제○창 _____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내용
1	2020.7.1. 14:04	"네 주인 누구냐?"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 - 오마이뉴스 기사
2	2020.7.권-8.권 사이 불상일 17:44	" '주차갑질 폭행' 유치원장, 운영비로 가족 건물 전기로 켜다" 오마이뉴스 기사
3	2020.7.권-8.권 사이 불상일 08:02	" " '주차 딱지' 붙였다고 폭행' ... 또 경비원에 갑질" - 군포신문 기사
4	2020.7.권-8.권 사이 불상일 18:22	" "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 " - SK브로드밴드 뉴스 기사
5	2020.7.권-8.권 사이 불상일 10:02	"또 경비원 '갑질' ... 폭행에 112 신고까지 '적반하장' " - OBS 기사
6	2020.7.권-8.권 사이 불상일 10:35	" <u>불법주차 스티커 붙였다고 유치원 원장남이 아파트 경비원 폭행</u> " - SBS 동영상
7	2020. 7. 27. 10:14	" <u>원장 경비원 갑질 논란</u> ' 열매유치원,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전기요금, 재산세 내고" - 군포시민신문 기사
8	2020. 8. 6. 14:59	" <u>네 주인 누구냐?</u> "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 - 오마이뉴스 기사
9	2020. 8. 6. 15:02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10	2020. 8. 7. 15:55	<u>군포 경비노동자 갑질폭행 규탄 기자회견</u> - 미디어파라 기사
11	2020. 8. 7. 22:25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12	2020. 8. 8. 10:56	" <u>원장 경비원 갑질 논란</u> ' 열매유치원,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전기요금, 재산세 내고" - 군포시민신문 기사
13	2020. 8. 16. 10:10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14	2020. 8. 18. 17:27	[단독입수] <u>텔 메리고 경찰 부른 유치원장, 영상에 다 찍혔다</u> - 오마이뉴스 기사 및 관련동영상
15	2020. 8. 19. 15:02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16	2020. 8. 19. 15:18	" <u>네 주인 누구냐?</u> "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 - 오마이뉴스 기사
17	2020. 8. 20. 07:55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18	2020. 8. 20. 07:59	" <u>네 주인 누구냐?</u> "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얼굴 갈긴 유치원장" - 오마이뉴스 기사
19	2020. 8. 21. 09:22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
20	2020. 8. 23. 10:23	" <u>경비원에 갑질한 유치원 원장, 엄벌해야</u> " - SK브로드밴드 뉴스 동영상